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173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2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76.8. 아파트지구 지정, '77.3.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 지구는 아파트지구 관련 규정 삭제 및 도시의 확장에 따라 '교외의 독립적 주거지'에서 '도심 주거지'로 성격이 변함에 따라 보편적·종합적 도시관리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18.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하였고 '22.10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아파트지구 제척 예정임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1번지에 종교시설(성당, '80.1. 사용승인)의 신축계획(안)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부합되나 사업일정이 촉박하여 선제적으로 아파트지구를 제척하여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아울러, 기존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시 대상지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구면적표 변경(안)

구분	계(m ²)	1주구 (금회 변경대상)	2주구	3주구
변경전	1,548,929.7	238,495.9	388,886.8	921,547.0
변경후	1,547,022.1	236,588.3	388,886.8	921,547.0
비 고	감) 1,907.6	감) 1,907.6	-	-

나. 1주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합계	238,495.9	100.0	236,588.3	100.0	감)1,907.6	
주거 용지	소계	127,680.5	53.54	127,680.5	53.97	
	주택용지	127,680.5	53.54	127,680.5	53.97	
중심 시설 용지	소계	15,815.6	6.62	15,815.6	6.68	
	지구중심	-	-	-	-	
	주구중심	8,445.2	3.53	8,445.2	3.57	
	분구중심	7,370.4	3.09	7,370.4	3.12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89,952.5	37.72	89,952.5	38.02	
	도로용지	25,724.4	10.79	25,724.4	10.87	
	공원용지	8,127.4	3.41	8,127.4	3.44	
	녹지	12,847.7	5.39	12,847.7	5.43	
	학교용지	39,167.0	16.42	39,167.0	16.55	
	공공청사	4,086.0	1.71	4,086.0	1.73	
기타	소계	5,047.3	2.12	3,139.7	1.33	감)1,907.6
	종교용지	5,047.3	2.12	3,139.7	1.33	감)1,907.6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구분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48,929.7	감)1,907.6	1,547,022.1	
제1종일반주거지역	71,811.3	-	71,811.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2,523.0	-	152,5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38,481.1	감)1,907.6	36,573.5	·반포성당 부지 반포 아파트 지구 제척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8,663.6	-	1,278,663.6	
자연녹지지역	7,450.7	-	7,450.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추진일정

- '22. 3. : 시의회 의견청취
 - '22. 4. 7.~ 4.22. :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22. 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변경 결정고시(예정)
- ※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 가능

붙임 : 1.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1부.

※ 작성자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미선 (☎ 2133-7144)

붙임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도

위치도



위치도(개발기본계획 결정도)

토지이용계획(1주구) 변경결정도

○ 기 정



○ 변경

